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

214

2011. 6. 28. 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1년 1월 31일

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】제2차 재정경제위원회(2011년 6월 28일) 상정,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○ 본 조례의 모법인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모든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「지속가능발전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기 타

(1) 입법예고(2010. 11. 11 ~ 2010. 12. 1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가. 개요

○ 본 조례의 모법인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「지속가능발전법」으로 개정(2010.1.13) 되면서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·추진 등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존립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폐지하고, 그 기능을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가 대체하려는 것임.

나. 동 폐지조례안의 추진경과

○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·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, 「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」이 2010년 9월 24일자로 제출되고, 동 기본조례안 제29조에 따라 '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'에 「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의 주요내용인 '지속발전계획'이 흡수, 통합됨에 따라 동 폐지조례안을 우리위원회에 제출함.

---<mark>관련 법 및 조례 제 개정 경과</mark>

- ◆ '09. 2. 25 「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 제정
- ◆ '09. 2. 27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정부안 국회 접수
- ◆ '09. 3. 18 「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공포
- ◆ '10. 1. 13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 및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개정
- ◆ '10. 9. 24 「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」 시의회 제출
- ◆ '11. 1. 31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」 시의회 제출

다. 조례폐지의 근거와 당위성

○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, 위 조례의 근거법령인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에서 위임 한 사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이러한 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¹⁾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등의 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, 위 사무는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임.

^{1) &#}x27;지속가능발전 기본법'에서 위임 내용 :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·추진(제5조), 이행계획의 수립·추진(제6 조),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(제8조),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(제18조) 등
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만 가능하며,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사무이므로,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기관위임 사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동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은 「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라 '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'에 포함되어 시행될 계획이므로, 조례안 폐지에 따른 법률적·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'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' 관련 규정

- ◆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(안) 제8조(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) ① 서울특별시장은 국가 전략 및 국가 5개년 계획이 수립·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단위로 시의 저탄 소 녹색성장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
- ◆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(안) 제12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·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
 - 3.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: <u>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</u>, 녹색생활 확산, 녹색국토, 녹색건물,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, 물관리 등의 분야
- ◆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(안) 제29조(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) 시장은 정부의 지속 가능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<u>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</u> 을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함
- 다만, 동 조례 제정(2009.3.18 공포, 2009.6.19 시행) 이후 2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,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움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 5. 토론요지 : 없음. 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없음. 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 8. 심사결과 : 「원안 가결」 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) 9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조례 제	호
	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
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	기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	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	시행한다.